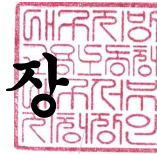


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7.28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



1. 건 명 :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서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64조,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, 제84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김○호	1961.12.6.	대구 달서구 대명천로51길 (이하생략)	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 결정통지서	실업급여지급제한(지급 중지)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	- 통 결정서를 2021.4.29., 2021.5.13., 2021.6.2. 2021.7.12. 네 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송달불가(폐문부재) -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 할수 있으며 심사 청구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정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청구가능

4. 공고기간 : 2021.7.28.~2021.8.11.(15일 간)
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이현정(전화 053-605-65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